

대북 유화(宥和)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역작용 한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 호 징

1. 김일성 세습정권의 반민족성

나는 일제하에서 태어나 만 15년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겪었다. 해방의 감격에 잠기고 미래의 꿈에 젖은 지 얼마 안되어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4년10개월의 군대 생활을 하였다. 제대 후 복교하여 학석사가 된 다음, 도합 6년 반을 미국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일제(日帝) 식민지 때 자유(liberty, freedom)와 평등(equality)의 소중함을 배웠고, 한국전쟁 때 자유와 형제애(fraternity)의 중요성을 음미하였으며, 미국 체재(滯在) 때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여겨왔는데, 어떤 기회에 UN총회에서 1948/12/10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접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실은 자유·평등·형제애로 요약되는, 인간의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권의 대헌장(大憲章)으로서 인권을 세계인 공유의 가치로 확인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강제성을 지니도록 이 인권선언을 remodelling한 것이,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라는 두 개의 국제인권협약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이 들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인권보장(人權保障)·법치(法治)·권력분립(權力分立)를 국시(國是)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상술의 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기재된 양식을 따른다. 즉 생명·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한마디로 인 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기적(periodic)으로 실시되며, 자유롭게 입후보한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보통·평등·직접선거이다. 이를 앞으로 공정자유선거라고 부르기로 한다.

1948/05/10에 김일성의 거부로, 한반도의 전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38도선 이남에 한해서, UN 감시 하에 실시되었던 선거는 바로 이 공정자유선거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 조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이런 선거로 하자는 것이다. 즉 통일

국가 제헌(制憲)국회 대의원 선출을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로 시작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제정을 거쳐서, 통일국가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전적인 책임은, 소련군의 주선으로 얻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중립국 UN 감시위원단이 입회하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를 거부한, 소련군 초급장교 출신의 김일성에 있다.

“김일성의 헌법”이라고 명명(命名)된 북한의 헌법의 서문(序文)에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고 되어있으며, “김일성의 당”이라고 불리는 조선노동당의 10계명(誡命)적인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하며, 그의 교시(敎示)를 신조(信條)화 하여야 하며, 그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즉 헌법 위에 노동당의 영도가 있고, 노동당 위에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교시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는 “전국민을 무장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선군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절대군주가 3대째 세습하여온 군국(軍國)주의 제국(帝國)이라고 볼 수 있다. 태양절(太陽節, 김일성 생일)을 국경일(國慶日)로 하는 북한에서는, “자유”를 누릴 권리는 천장절(天長節, 日皇의 생일)을 즐기던 일제(日帝) 하의 신민(臣民)보다도 없다. 핵심(核心)·동요(動搖)·적대(敵對)계급의 신분제도 하에서 “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20만의 백성을 수용하는 가혹한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흉년이 오면 대량 아사(餓死)가 일어나는 곳에서 “형제애(兄弟愛, 博愛)”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주민은 김일성 일족에게 철저히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사칭(詐稱)일 뿐이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지명한 한사람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99%가 투표장에 나가서, 비밀경찰의 입회하에, 100%가 찬표(贊票)를 던지는 것을 선거라고 한다. 이는 수령(首領, 김일성과 그의 자손)이 지명한 입후보자를 강제로 승인하게 하는 선거양식의 연극(演劇)에 인민이 동원되는 것 뿐이다. 좋게 말해서 부정선거(不正選舉)이다. 다음 표는 김일성왕조 3세가 지배하는 북한의 오늘의 모습이다.

나라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조사대상 나라총수
인권상태 순위	F	F	F	NF	NF	NF(194위)	195
경제적자유 순위	10	24	34	139	136	177	177
언론자유 순위	32	53	50	148	173	178	179
민주주의성숙도 순위	19	21	22	117	141	167	167
인간개발지표 순위	3	10	12	55	101	자료없음	185
현역군대수 순위	2	20	6	5	1	4	

나라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조사대상 나라총수
일인당GDP(ppp) 순위	9	27	29	57	96	165	196
금액(US\$)	49,000	36,200	32,400	17,700	9,100	1,800	

F는 Free(1~90위), PF는 Partly Free 그리고 NF는 Not Free(149~195위)를 뜻함

인권상태 순위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3 (Subcategory의 점수까지 고려한 순위이다.)
경제적자유 순위	Heritage Foundation et al,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언론자유 순위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2013
민주주의성숙도 순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1
인간개발지표 순위	UN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index 2013
현역군대수 순위	Global Security Organization, Active duty uniformed troop strength
일인당GDP(ppp)	USA CIA, World Factbook (2009~2012)

김일성일족(一族)은 상습적인 부정선거와 인민의 인권탄압을 수단으로 65년간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여왔다. 권력확장(擴張)을 위한 전쟁(戰爭)·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살인(democide)· 아사(餓死)로서 동포 수백만 명을 숨지게 하였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 이래 어떤 지배자나 침략자보다도 더 많은 동포를 숨지게 하였다. 즉 김일성 일족은 한반도 유사 이래 최악의 살인자이며 민족반역자들이다. 미국의 Parade지(誌)는 2011년에 The World's 10 Worst Dictators를 선정(選定)하면서 김정일을 그중 세계 제1의 독재자로 등극시켰다. UN총회는 극단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는 대북(對北)인권결의안을 2011/12/19에 통과시켰다. 위의 표는, 65년 이어온 김일성왕조가, 백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악(evil)의 집단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되어 단죄되어야할 반인륜적 조직임을 알려준다. Geneva에 있는 UN의 인권협의회는, 2013/03/21에 북한의 인권상태를 조사 보고할 청문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47명의 위원 전원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일성세습독재정권의 당면 목표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1950년 초의 남북의 군사력의 비대칭 상태를 재현(再現)하여, 6·25 때 김일성이 시도(試圖)하였듯이, 기습전격(奇襲電擊)작전으로 남한을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김일성왕조의 정략(政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방문으로 이루어진 2000/6/15 선언 및 2007/10/4 선언과 최근의 핵무기실험 및 탄도미사일실험 강행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 (1) 남한의 친김반미(親金反美, 이른바 從北)인사와 결탁하여, 김일성세습정권과 대한민국을 묶어서 소위 남북 연방국가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둔(駐屯) 명분(名分)이 사라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한다.
- (2)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무장하여 미국 본토를 겨누며 위협하여, 핵무장 해제(解除)를 평화조약체결·주한미군철수와 연계

하여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왕조의 혈맹(血盟)인(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의 국익(國益)과도 일치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김일성왕조는 남한의 친김반미(親金反美, 이른바 從北) 정치인들을 선동하여 남한의 방위전력을 약화시킨다. 즉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휴전선에서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 지상군을 수도권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수도권 방위의 전략적 수역(水域)인 NLL 이남을 평상시 북한의 어선(위장 선박)에 개방하여, 유사시 북한군의 인천상륙-수도권장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헌정(憲政)질서 교란(攪亂)을 선동하는 한편, 징병기간 단축, 국방예산 삭감, 해군기지 조성 반대 등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억지력을 사실상 약화(弱化)시킨다. 심지어는 휴전 중의 김일성왕조의 군대를 국군의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선전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한시적) 평화 유지의 대가로, 남한 사람의 세금으로 구매한 쌀과 질소비료 등의 전략물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원조를 받아 김일성왕조의 체제 안정과 남정(南征) 전력(戰力)의 강화에 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격성은, 김일성일족의 권력욕에 원초적 동기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오해에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김일성세습독재정권을 대상으로 대화로 생산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妄想)이다.

2. 헌법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통령의 책무(責務) 관련 헌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6조(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保全)·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6조(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UN이 1948/12/12에 총회 결의 195(III)에 의하여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唯一)합법정부라고 선언한 나라이다.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소련이 제공한 T-34탱크, YAK전투기와 따발총을 가지고 38선을 넘어 1950/06/25에 남침하자, 16개 나라의 군대로 이루어진 UN군을 보내서 지켜준 나라이다.

UN총회 결의 195(III) 1948/12/12

... Declare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이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후 DJ로 약칭)은 2000년 6월 수억 불(弗)을 싸들고 평양으로, 김일성왕조의 제2세 폭군인 김정일을 찾아갔다. 그리고 말미(末尾)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고 서명된 소위 “6·15남북공동선언”에 서명 발표하였다.

(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UN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신이,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정부가 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한반도 북반부의 땅은 김일성왕조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 6·25의 전범(戰犯)이며 동족대량살해범의 아들이며, 1990년대 후반에 동족을 대량으로 굶어죽게 한 당사자이며,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전에 먼저 사라져야 할 자이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목적달성을 하면 약속 폐기(廢棄)를 다반사로 하는 독재자들의 공통 특징을 지닌자인 김정일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 휴전상태의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 충분할 때까지) 필수적이었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이 되는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을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남북이 비대칭적 군사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반도를 1950년의 6·25 직전의 상태로 회귀(回歸)시키자는데 동의하였다. DJ는 헌법 제66조 (2)항, (3)항의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라) 수억 불의 미화와,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는 쌀과, 화학적 처리로 쉽게 폭약이나 로켓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질소비료를 무상으로 퍼주어서, 김일성왕조의 핵무기 미사일 등의 대남 전력(戰力) 강화를 사실상 도와서, 남북전력의 비대칭성을 심화(深化)시켰다. 즉 대한민국의 국익을 명백하게 해쳤다.

DJ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휴전상태에 있는 적(敵)의 수장(首長)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민족반역의 세습독재자와, 우리의 헌법 제4조에 부합되지 않은 야합(野合)을 해놓고, “역사적 화해”를 했다고 선전하였다. Norway의 노벨위원회는 (1973년 Kissinger에 주었던 것과 같이) 2000년 12월 DJ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였다. DJ는 2000/12/09의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늘 같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1/01/20의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등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DJ를 석방하라”는 김일성정권의 부주석인 김일(金一)의 1981/01/19의 평양방송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일은 (1) DJ가 (햇볕정책의 명목으로) 준 돈을 보태서 원자탄을 만들어 대남전력을 강화하여, 대남(對南)군사력의 비교우위(優位)를 더 확보하였으며, (2)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남한의 친김반미(중북) 세력의 제도권(制度圈) 정치무대 진출을 도왔으며, (3)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의 국제적 위상의 격상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DJ 자신은 경의선 연변(沿邊)의 지뢰를 제거하고, 간선(幹線)도로에 있던 대전차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안선의 대간철용철조망을 철거시켰다. 평화 무드를 조성하여 심리전 측면에서도 대북 방위전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판사 전력(前歷)의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후 MH로 약기)은 “그 놈의 헌법 ...”의 발언에서 추정(推定)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헌법준수 의무를 무시하고, 우리 북한동포의 인권 문제에는 전연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MH정부의 UN대사는 UN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棄權)하였다.

MH는 임기를 수습일 남기고 2007년 말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김정일과 더불어 소위 “2007남북정상선언”에 서명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MH는 세습독재자와의 야합(野合)으로 이루어진 반헌법(反憲法)적인 DJ-김정일의 6·15공동선언을 고수(固守)하기로 약속하였다.

1972년 4월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에게 “민족적 대단결을 하자”는 남북공동성명에 동의해 놓고, 김일성은 그 직후 휴전선 밑에 납침용 땅굴을 팠다. 1992/02/19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해놓고, 핵폭탄 개발에 착수하였다.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은 휴전협정 위반을 다반사(茶飯事)로 하였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존중 하겠다”고 세계인에 약속한 (상술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비준하여놓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 상습적 거짓말쟁이이며 반인륜(反人倫)적 범죄자인 김정일을, 인권변호사이었으며 (역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MH가, 존중하고 신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07남북정상선언 제3항에는 “... 전쟁을 반대하며,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라고 되어 있다. 선군정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총인구의 약 5%나 되는 현역(現役)병력을 유지하

면서, 휴정협정을 수 없이 위반하였으며, (1999년에) NLL을 고의로 월경 남침하여 연평해전을 유발한 당사자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기만(欺瞞)일 뿐이다. 실제로 그 후에도 김정일의 해군은 2010/03/26에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의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2010/11/23에는 시민거주 연평도를 해안포로 포격하여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특히 NLL이남의 수역은 역시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의 인접(隣接)수역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해(領海)이다. 이 영해수역은 수도권 방위의 요충(要衝)수역이다. 6·25사변 때 UN군이 상륙작전으로 수도권을 단시간 내에 제압하여 전황(戰況)을 역전시키는데 기여한 곳이다. 김정일의 군대가 기습 남침으로 속전속결하는데 전략적으로 유용한 수역이다. 대통령이었던 MH의 이 제3항에의 동의는 헌법 제5조 (2)항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선임(先任) 대통령이었던 DJ는, 1999년 NLL을 남침(南侵)한 북한 해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연평해전 유공(有功) 해군제독을 좌천(左遷)시켰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회담, ...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2007남북정상선언 제4항 역시 독소(毒素)조항이다. 정전(후전)협정을 수 없이 위반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평화협정을 준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전체제의 종식을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 김일성의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限)은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6·25전쟁과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1949년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김일성왕조의 시조(始祖)는 1950년 외세의 후원을 얻어 기습 남침하여, 우리민족 200만을 희생시켰다.

북한 땅에서 원자탄의 폐기 여부를 서방국가가 검증(verify)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검증수단으로 (“혈맹”이며, 지리적으로 접경한) 중국이 김정일의 원자탄 개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과 에너지를 김일성왕조에 공급하는 중국은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다. 중국이 주최하는 6자회담에서 북중(北中)의 공통적 관심사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6·25 직전의 상태로 회귀(回歸)시키는 것이다.

3. 대북유화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해(害)가 된다.

한반도는 초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틈바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북반부는 일제 35년간의 강점(強占)에 이어 민족반역의 세습독재정권인 김일성왕조가 65년간 강점하고 있다. 극단(極端)적인 폐쇄(閉鎖)성, 배타(排他)성, 공격(攻擊)성을 지닌 김일성왕조는 한반도 인구의 2/3 이상의 남한 동포와의 평화공존조차도 거부하며, 대남 무력공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7400만의 주민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거나 김일성왕조에 의한 무력통일 뿐이다. 즉 한반도 전체가 현재의 남한과 같이 되거나, 현재의 북한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선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해방 후의 역사에서 배웠다.

DJ와 MH는 남정(南征)의지를 지닌 김일성왕조와 야합(野合)을 하였다. 평화공존의 뜻이 전혀 없는 김일성세습정권을 상대로, 적대행위중식-평화공존-연방제통일 지향(志向)을 위하여 “신뢰·존중·협력·원조”를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동포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였다. DJ와 MH의 “퍼주기”식 원조는 김일성왕조의 핵폭탄과 장사정미사일 개발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남정(南征)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표출되었다.

2013년의 대한민국 새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대북 투자나 원조를 하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지극히 위험한 대북유화정책이다. “햇볕정책”을 “신뢰process”로 바꾸어 신장개업(新裝開業)하는 듯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 김일성왕조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를 일시적으로 폐기하더라도, 제조기술의 knowhow와 원료광물자원을 가진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압도적 다수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하여서도 전격기습 선제(先制)공격으로 김정은의 인민군대는 남한의 수도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 김일성의 군대는 남침하였다. 더욱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남북 군사력의 심한 비대칭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김일성의 세습정권에 대한 투자나 원조는, 우리에게는 납세자의 세금 낭비(浪費)와 방위력 약화를 유발(誘發)하면서, 김정은에게는 독재체제의 안정과 남정전력(南征戰力)의 강화에 기여할 뿐이다. 독재자에 대한 유화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작용(逆作用)을 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의 소멸에 있다. 외교적 수단을 써서, 북한의 인권상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적 여론 조성으로 김일성왕조를 압박하여 붕괴(崩壞)를 유발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Geneva에 있는 UN의 인권협의회(Human Rights Council)는 2013/03/21에 북한의 인권상태를 면밀하게 조사 보고할 책임을 지울 청문위원회의 설치를 47인의 회원 전원 합의로 결의하였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김정은을 “인륜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고발을 해서 유죄판결을 얻어 낸다면, 북한 땅에서 주민인권회복의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의 정부는 이 방향으로 외교력을 발휘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방위력의 구축으로 김일성 세습정권의 오판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의 효율적 지휘체제 구축·재래식무력 증강·신무기(개발) 실전배치·군사동맹 강화는 김일성세습정권의 남정(南征)의지를 꺾어서 전쟁을 억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평화와 자유는 무상(無償)으로 누릴 수 없으며, 평화와 자유 없이 번영은 불가능하다.